

에 대하여 本 委員會는 충분한 立證資料를 갖고 深度있는 質疑 答辯 등 신중한 審査를 한 바, 1976年 7月 策定 施行되었던 手數料를 年間 消費者物價指數 類似業務 關聯 手數料 平均值 및 사사오입과 절사 등 3段階 算出方法에 依據하여 적정하게 算出하여 調整하였고 그 立案 節次上으로도 瑕疵가 없으므로 妥當한 條例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2年 11月 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를 改正 施行한 후 使用料를 調整하지 않아 類似施設의 使用料와 차이가 현저히 있으므로 이를 段階的으로 引上 調整하고 其他 死文化된 일부 條項을 현실에 맞게 전면 改正하여 運營의 合理化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基本施設 使用料를 9.5% 引上하고 附屬施設 및 其他施設 使用料를 10% 引上하여 新規 設置한 公演裝備 및 비디오攝影과 冷暖房 使用에 대한 使用料 徵收根據를 新設하는 것입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深度있는 質疑 答辯 등 신중한 審査를 한 結果 世宗文化會館 使用手數料가 類似團體에 비하여 현저히 低廉하므로 物價政策을 감안하여 段階的으로 引上하는 것으로써 改正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기타 條例案 內容에 대해서는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書面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當 委員會가 審査報告한 대로 可決하여 주시기를 期待하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瓌會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音盤및비디오物販賣·貸與業者登錄等에 관한手數料徵收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

布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록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신청 : 2,000원
2.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1,000원
3. 영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 1,000원

제3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 당해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음반판매업자등록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參 照)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